

# 머 리 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에도 현지 세법관련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르완다 5개국에 대한 세무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는 현지 국가 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박영준





# South Africa

## I. 국가개황 1

- 1. 국가개요 ..... 3
- 2. 경제구조 특성 ..... 6
- 3. 한국과의 주요 관계 ..... 14

## II.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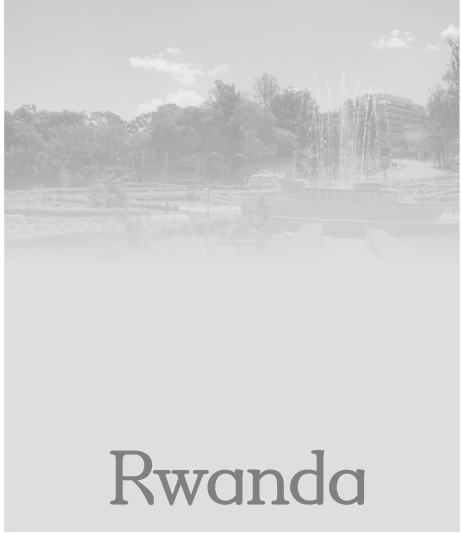
- 1. 투자법 개요 ..... 19
- 2.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 20
- 3. 투자 인센티브 ..... 20
- 4. 각 주별 투자유치 ..... 21

## III. 세제 및 세정동향 29

- 1. 개요 ..... 31
- 2. 개인 소득세 ..... 31
- 3. 법인세 ..... 33
- 4. 부가가치세 ..... 37
- 5. 관세 및 특소세(Excise Duty) ..... 38

## IV. 기타(중국, 일본과의 관계) 39

- 1. 중국 ..... 41
- 2. 일본 ..... 42



# Rwanda

## I. 개 황

67

- 1. 행정 및 정치 ..... 69
- 2. 경제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 71
- 3. 생활과 문화 ..... 75

## II. 주요 세법

83

- 1. 법인세 ..... 85
- 2. 소득세 ..... 89
- 3. 부가가치세 ..... 91
- 4. 지방세 ..... 93
- 5. 소비세 ..... 95
- 6. 원천세 ..... 96
- 7. 기타 지급에 대한 원천세 ..... 98
- 8. 투자혜택 ..... 99
- 9. 투자법인설립 ..... 102
- 10. 국세청 조직 ..... 106



# South Africa

## I. 국가 개황

1. 국가개요
2. 경제구조 특성
3. 한국과의 주요 관계



## I. 국가개황



### 1. 국가개요<sup>1)</sup>

#### (1) 개관

- 국 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수 도 :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 면 적 : 1,219,090km<sup>2</sup>(한반도의 5.5배, 남한면적의 12배)
- 인 구 : 4,680만명(2007년 기준)  
흑인(79%), 백인(9.6%), 혼혈인(8.9%), 아시아/인도(2.5%)
- 국 경 일 : 4.27(Freedom Day, 1994.4.27 흑인정부수립 기념일)
- 국 가 원 수 : Jacob Gedleyihlekisa Zuma 대통령
- 정 부 형 태 :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 의 회 : 하원(National Assembly, 400명),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90명)
- 종 교 :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등
-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은데벨레, 코사, 줄루, 페디, 소토, 츠와나, 스와지, 벤다, 총가 총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
- G. D. P : 2,802억미불(2008년)
- 1인당GDP : 5,663미불(2008년)

1) 자료원 : 주한 남아공대사관

#### 4 ■ 남아공·르완다

##### ○ 교역

- 수출(2008년) : 824억불(금, 백금류, 철합금, 석탄, 승용차 등)
- 수입(2008년) : 877억불(원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기, 무선송신기기 등)

○ 화폐단위 : RAND(\$1=8.0Rand, 2009.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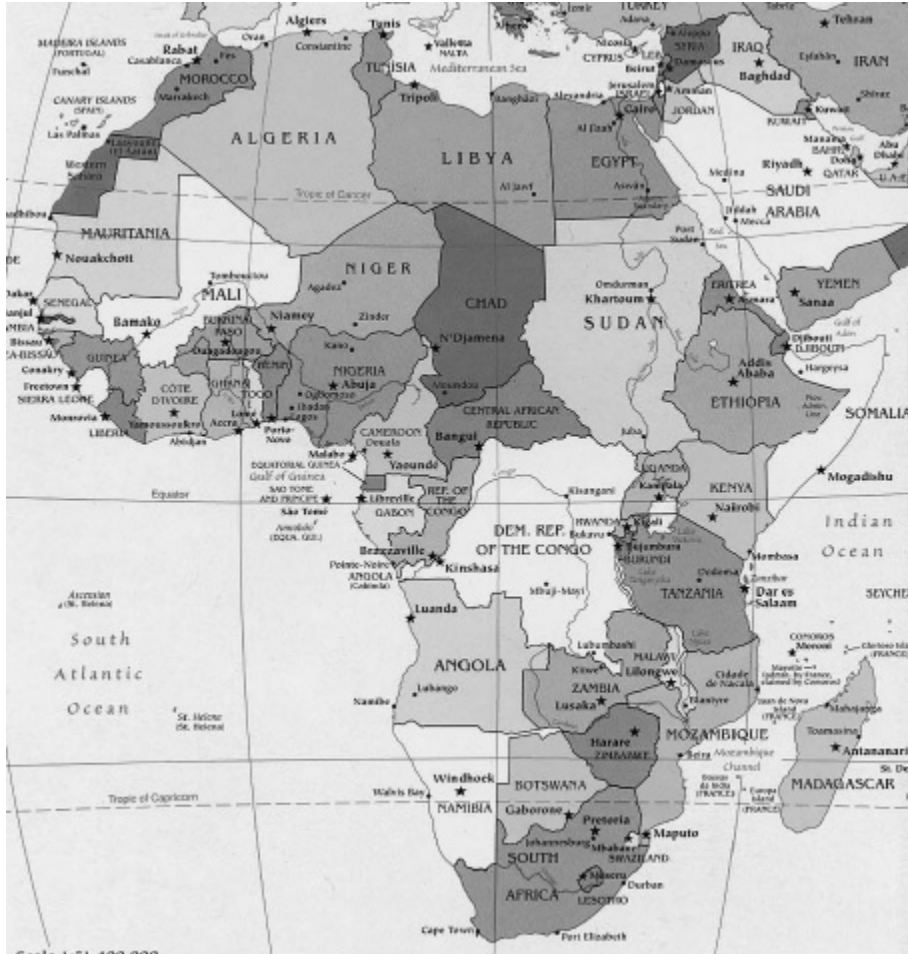
○ 국제기구가입 : UN, WTO, IMF, WHO, ILO, OAU(아프리카단결기구), NAM(비동맹), 영연방,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

#### (2) 지형

- 아프리카대륙의 최남단(남위 220-350, 동경 170-330)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인도양, 서쪽으로 대서양을 낀 동고서저 지형을 가진 천혜의 자원부국
- 고원지대로 된 좁은 해안대로 구성, 고원 동쪽으로 Drakensberg 산맥이 위치



[아프리카 지도]



(3)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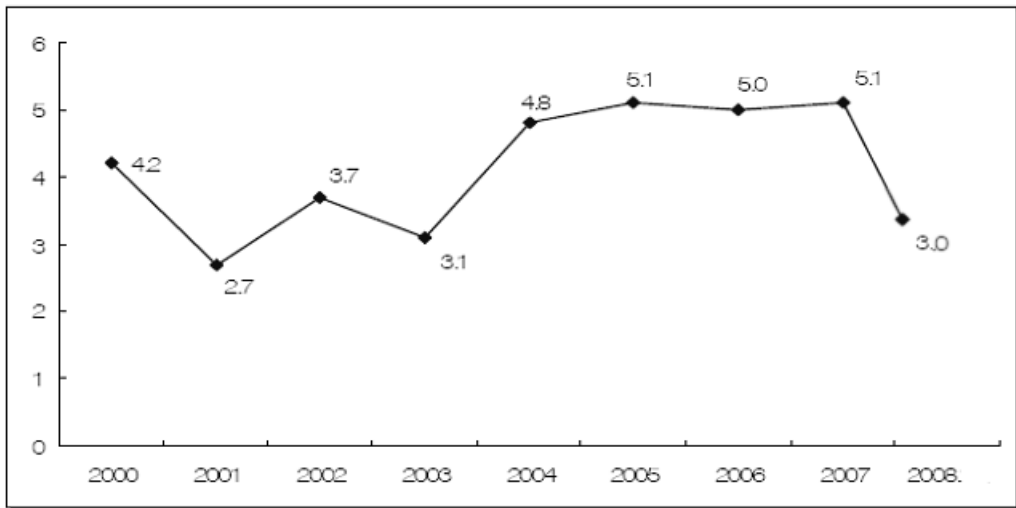
- 아열대성 기후로 동부지역이 서부보다 온난다습
- 1년은 크게 여름(11월-3월)과 겨울(6월-9월)로 나뉘지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 가을이 짧게 지속
- 여름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은 건기로서 강우량이 극히 소량

## 2. 경제구조 특성2)

### (1) 거시경제

- 지난 1999년 이후 장기 성장국면에 진입한 남아공 경제는 높은 수준의 민간 소비, 저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요인에 힘입어 2007년까지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함
- 2004년 경제는 4.8% 성장했으며, 2005년에도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확대, 산업생산량 증가 등 요인이 지속되어 5.1% 성장해 지난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3%대로 하락

[남아공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출처 : 남아공 중앙은행, IMF

- 현재 2010년 월드컵 개최 준비·주택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건축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 있는 남아공의 IT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2) 경제정책

- 흑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인 기득권층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 유지를 기조로 하는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채택
- 흑인들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비율의 지분을 흑인들에게 유상 양도하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BEE)을 추진
- 남아공 경제의 주요 당면 문제는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 National Congress)내 권력교체에 따른 갈등 및 경제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58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보균자 등 국민건강 문제, 세계 최고수준의 범죄율, 세계경제 침체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적기 대응 지연, 高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기능인력 부족 및 백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임

## (3) 교역구조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중 최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약 20% 점유(2007년 기준)
- 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 철합금, 석탄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무선송신 기기 등임
- 주요 교역국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이며, 최근 아프리카 국가 특히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
  - 2008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독일

- 2008년 기준 아프리카와의 교역액은 165억불(수출 104억불, 수입 61억불)

#### (4) 통상·투자환경

##### □ 수입정책상의 장벽

###### ① 관세장벽

- 과거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산업을 보호하였음
-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
- 1995년 약 15%에 달하던 기준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현재 5% 수준까지 인하되었고, 2005년 기준 농산물 수입액의 34.2%, 비농산물 수입액의 69.3%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0%로 인하되었으며 2012년 25.0%까지 인하될 예정

###### ② 수입규제

-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

##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국내산업 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 자료출처 : 美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05년)

## ③ 통관절차상 장벽

-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 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과정에서 invoice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

## ④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음
- 최근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5. 5월부터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 상존
-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생산업체의 ‘과세 대상자 확인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남아공에서 만든 섬유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표기 의무화

## 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

## 10 ■ 남아공·르완다

- 2004년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 제정
-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 삽입을 의무화
-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
-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는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 ⑥ 품목별 장벽

-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
-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MIDP)” 시행
-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시 관세혜택

### ⑦ 지적재산권 보호

-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적재산권 수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
-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남아공 내 미국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35%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19백만불에 달함
- 최근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
- 모조품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원 확충, 모조품 수거를 위한 창고 확대, 세관원/국경경찰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⑧ 서비스장벽

- 통신시장은 Telkom이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통신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신비용이 매우 높음
- 2005.12월 제2통신사업자(Neotel)가 선정되어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 되었으나 기존 Telkom의 견제가 심한 상황

## □ 투자 장벽

### ①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흑인경제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BEE) 정책은 남아공 기업에 기업별 흑인지분 할당, 흑인종업원 할당, 흑인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입 등을 권장

### ②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
-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을 통한 투자 진출의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 승인 필요

### ③ 외환관리

-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달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
-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 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
-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 가능

④ 과실송금 보장제도

-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음. 다만,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
-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
- 외국 자회사의 본사로 이익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송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사전 허가절차가 필요
- 경영기술 관련 비용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

⑤ 경쟁정책

-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시장에는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
- 에너지, 교통, 통신시장은 여전히 독점시장으로 존재

(5)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 풍부한 광물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석유가스 연관 산업과 원자력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망간, 크롬, 백금, 바다뽀, 질석 등 희귀 금속 매장량 세계 1위
  - 풍부한 석탄(생산량 세계 5위)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과 석탄으로부터 액화석유 추출하는 기술(CTL 및 GTL) 보유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중소형 원자로개발사업인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 추진 중



- 광업(mining)은 GDP의 9.5%로 40만명의 고용효과와 총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광물(processed minerals)을 포함시 총수출의 1/2을 차지
- 금, 백금류 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 광물 수출의 90% 차지
  - 금광산업은 GDP의 3%, 수출의 15%, 20만명 고용효과
- 에너지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25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수요로 인해 에너지 집약(energy-intensive) 경제구조 보유
  - 적은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에 비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 전기 생산 비용은 낮은 수준
  - 석유 생산은 주로 석탄으로부터 액화 추출에 의존

[남아공 주요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종 류	단 위	남아공(A)	세계(B)	A/B (%)	세계순위
안티몬	천톤	44	1,800	2.4	6
크롬	백만톤	100	810	12.3	2
형석	백만톤	41	230	17.8	1
금	톤	6,000	42,000	14.3	1
망간	천톤	32,000	380,000	8.4	3
백금족	톤	63,000	71,000	88.7	1
티타늄	천톤	71,300	1,380,000	5.2	4
바나듐	천톤	3,000	13,000	23.1	3
지르콘	백만톤	14	38	36.8	1

※ 자료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7.

### 3. 한국과의 주요 관계<sup>3)</sup>

#### (1) 교역 개요

- 1992.12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
- 1997년은 30억불에 달하였으나, 이후 약 15억불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5년 이후 20억불을 초과, 2008년에는 교역액 35억불 기록
-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	530	959	1,319	1,794	1,753	1,397
수 입	782	999	1,094	1,385	1,766	2,159
계	1,312	1,958	2,413	3,179	3,519	3,556

\* 자료출처 : KOTIS

- 2008년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동차,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급감(△20.3%)
- 수입은 상반기 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22.2%)
- 2009년(1-3월)에도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46%, △62% 급감하는 등 교역규모 감소추세 지속

#### (2) 투자 동향

- 투자동향

3) 자료원 :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 - 연도별 직접투자액(신고기준)

(단위: 천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직접투자액	196	123	26,697	5,983	29,397	21,942	168,845

\* 자료출처 : 수출입은행

## -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불)

투자기업명	건 수	금 액
Samsung Electronics(삼성전자)	6	48,857
LG Electronics(LG전자)	4	42,407
Innoland Property(이노랜드건설)	1	20,305
Daewoo Motors(대우차)	4	18,255
Malesela Taihan Electronic Cable(대한전선)	2	14,100
Poschrome(포스코)	2	10,050
Sinna Manufacturing	4	2,845
SJM Flex	3	2,249
Daewoo AMIC	2	2,327
ONSE Telecom(온세통신)	7	1,500
Ceragem	3	1,810

\* 자료출처 : 수출입은행

-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제62위 투자대상국(비중 0.16%)
- 대부분 수출 및 수입을 위주로 하는 판매법인의 형태로 투자
- 제조업 투자는 대한전선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MTEC)가 유일





# South Africa

## Ⅱ.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1. 투자법 개요
2.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3. 투자 인센티브
4. 각 주별 투자유치



## II.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 1. 투자법 개요

- 남아공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과 같은 투자법령이 없으며, 외국 기업은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
-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이 깊은 남아공 내 법령은 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Law), 노동법(Labour Law),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회사법(Company Act) 등이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형태에 따라 Company Act와 Close Corporation Act가 적용
  - 구성원이 최대 1명인 Close Corp 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개념으로써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소규모의 사진관, 식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Close Corporation Act가 적용
-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Company Act의 적용
  -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Local Company로 등록하는 방안
  - Local Company는 다시 Public Company와 Private Company로 구분
  - 회사설립은 Register of Companies에 등록함으로써 설립
-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로 가능
  - 다만, BEE 육성정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BEE 기업 및 현지 관련 협회와 어떠한 형태로든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
- 남아공에 투자하는 기업은 모두 독립 회계법인을 회계 감사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 내에 현지 회사(Locally incorporated Company)가 아닌 지점 형태의 회사(External Company)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아공 회사법 제32조에 따라 지점 설립 후 21일 이내에 등록
- 이러한 조항은 공기업 및 사기업 모두에게 적용, 만약 수출입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다면 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

## 2.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 고용창출 규모가 큰 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기술기반이 부족한 IT 산업의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
- 남아공에는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여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투자가 가능
- 은행과 방송분야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
  -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rar of Deposit-Taking Institution의 승인 필요
  - 49%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 필요
  - 방송 분야의 외국인 지분소유는 20%로 제한

## 3. 투자 인센티브

- 남아공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아래 5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 광범위 투자(Broad Investment in South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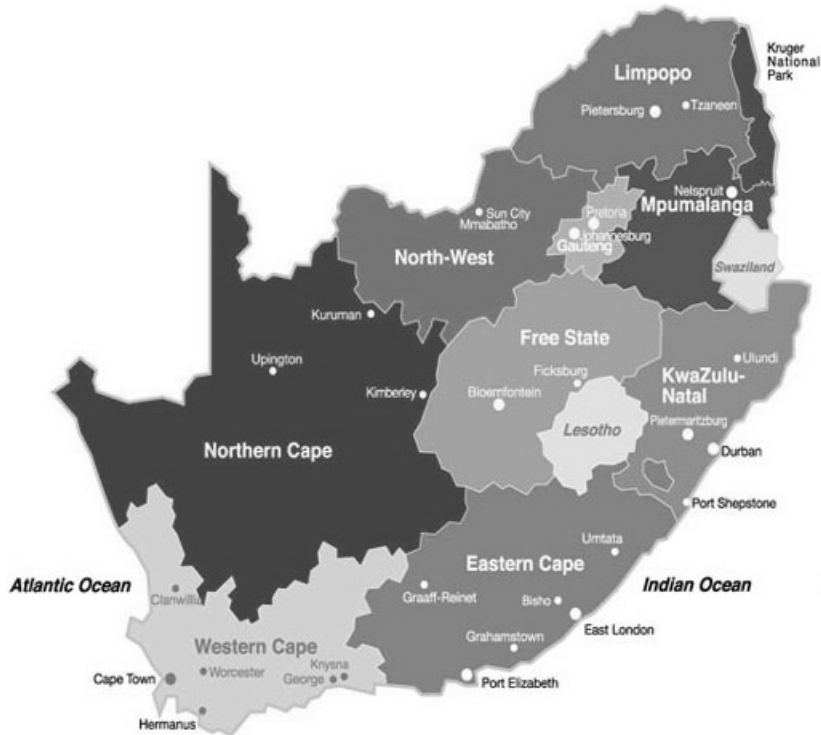


-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기술혁신(Innovation and Technology)
  - 수출경쟁력 제고(Competitiveness and export capabilities)
  -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s)
-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건 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
  -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면제는 없으며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
  -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 투자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
  - 금융지원은 남아공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
  -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

#### 4. 각 주별 투자유치<sup>4)</sup>

- 남아공의 9개 주 정부에서는 지역별 독특한 특색을 바탕으로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

4) 자료원 : 주한 남아공 대사관



(1) 노던케이프 (Northern Cape)

- 노던케이프는 남아공 9개 주 중 면적이 가장 크며 국토의 30%를 차지
- 남아공의 네 개의 다른 주뿐 아니라 대서양과 나미비아, 보츠와나와 접경
- 노던케이프주 남쪽을 흐르는 오렌지 강은 건실한 농업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 주정부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 광업, 광물가공
    - 호타젤 휘로망간 제련소
    - 해양업, 다이아몬드 채광

- 농업, 농산품가공
  - 4천 톤의 건포도 생산을 위한 SAD 합작투자
  - 올리브 & 올리브오일
- 인프라
  - 피올스드리프트(Vioolsdrift) - 저수용 댐
  - 농업개발지원을 위한 대량 서비스 인프라

## (2) 노스웨스트 (North West)

- 노스웨스트주는 서쪽으로는 보츠와나, 동쪽으로는 경제의 원동력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하우텡에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
-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준의 관광업 및 농업이 발달
- BMW, 삼성, 네슬레, 하인츠, 화이어스톤 타이어, 보쉬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위치
- 투자진흥기관인 노스웨스트투자청은 인센티브 혜택, 비자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3) 림포포 (limpopo)

- 림포포주는 광업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주 경제의 20%를 차지
- 가장 비옥한 농지를 소유한 곳으로, 다양한 아열대 과일 및 견과류 재배 등 농업부문 강화
-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 광업
    -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플래티넘계 금속, 크롬, 바나듐을 비롯

하여 상당한 매장량의 구리, 니켈, 철광석, 티타늄이 지역 중심에서 생산

■ 농업

- 농업은 매력적인 투자분야로 피터즈버그 국제공항을 통한 직접수출의 가능

■ 관광

- 지역 내 야생동물농장에 대한 수요증가.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과 농업 활동이 접목된 분야로 투자수익이 증가

■ 제조업

- 제조업과 관련한 투자기회는 구체적으로 제혁업, 과일, 야채 및 육류 가공, 벽돌, 보석 및 가구제조, 산업용 화학물질, 경공업 분야  
림포포에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회사들로는 사만코르(Samancor, 실리콘 용해), 에스콤(Eskom, 전력발전), 그라노르 파시(Granor Passi, 과일주스), 보난자 (Bonanza, 가구제조), 칸힘(Kanhym, 육류가공) 등

(4) 웨스턴케이프 (Western Cape)

- 수입관세의 인하와 지역 중공업의 기반이 되는 살다나 제철(Saldanha Steel)의 설립으로 산업기반 마련
- 웨스턴케이프는 개방 경제 체제로 해외무역이 이 지역 총생산의 30%에 육박
- 과일, 생선, 야채와 같은 1차 산업 상품들이 전통적으로 웨스턴케이프의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공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 진흥청(WESGRO)은 주요 개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독립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국제회의 관광
  - 생태관광
  - 영화제작 / 산업
  - 선박수리, 컨테이너 선적, 오일 / 가스 굴착
  - 정밀공학
  - 선박건조
  - 농산물 가공

(5) 음푸말랑가 (Mpumalanga)

- 남아공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모잠비크, 스와질랜드와 국경을 접하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 유지
-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우수 교육 기관에 의해 지원 되는 노동력이 풍부
- 드라켄스버그 산맥을 통한 관광지로 유명
- 음푸말랑가 투자이니셔티브는 음푸말랑가 주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무역 및 투자 촉진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들의 원활한 지역 이전 등을 주로 지원
- 넬스프루이트에 본사를 두고, 위트뱅크와 요하네스버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잠재적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철강 & 스테레스스틸
  - 목재가공
  - 관광업

## (6) 이스턴케이프 (Eastern Cape)

- 이스턴케이프는 항공, 도로, 철도망 등의 접근이 용이
- 120개 대규모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생산의 25% 이상을 수출
-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ECDC)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공식 기관으로 기업 및 투자가 개발 및 지원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자동차 산업
  - 전자 및 IT
  - 광물, 금속, 엔지니어링
  - 제약
  - 플라스틱
  - 관광  
공원, 박물관, 공예품 시장,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리조트
  - 임업 및 목제품, 가구

## (7) 콰줄루나탈 (KwaZulu-Natal)

- 콰줄루나탈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잘 발달된 인프라 구축되어 있음
- 콰줄루나탈의 경제 활동은 주로 더반을 중심으로 한 에디크위니 메트로폴과 피터마리츠버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리차드베이와 엠팡게니 지역·레이디스미스와 예자케니 지역·뉴캐슬과 마다테니 지역·콰줄루나탈 남부 해안 지역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분야 (8개 핵심 분야)

- 섬유, 의복
- 화학, 플라스틱제품
- 조립금속제품
- 자동차부품
- 목재 및 목제품
- 신발류
- 기계류 및 가전제품
- 일차 및 가공 알루미늄

(8) 프리스테이트 (Free State)

- 아홉 개 주 중 세 번째로 면적이 큰 프리스테이트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주 수도는 남아공의 사법수도인 블룸폰테인임
- 프리스테이트주는 세계 최대의 금광 매장량 및 연간 10만 톤의 야채와 4만 톤의 과일이 이곳에서 생산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 금보석 / 가공
  - 화초 원예
  - 제약업 (R&D)

(9) 하우텡 (Gauteng)

- 남아공의 금융 중심지
- 남아공 GDP의 38%, 재정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9%를 생산
- 하우텡경제개발청(GEDA)은 지역 내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며 국내외 투자가 지원·해외홍보 및 투자 수출 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초청하며 유럽 기계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입찰 참여기회를 현지 산업계에 제공
- 하우텡관광청(GTA)은 ‘블루 IQ’로 불리는 자체 특구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
- 이는 혁신주도형 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분야에 초점





## South Africa

### Ⅲ. 세제 및 세정동향

1. 개요
2. 개인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관세 및 특소세(Excise Duty)



## Ⅲ. 세제 및 세정동향



### 1. 개요

-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가 조세징수를 전담하며 1997년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에 근거하여 징수
- SARS는 효율성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남아공의 조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남아공의 주된 세원은 기업 및 개인에 부과되는 직간접세와 관세 및 물품세와 같은 기타 세금으로 구분<sup>5)</sup>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남아공은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이중 과세방지협정 체결

### 2. 개인 소득세

- 남아공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18%이며, 최고 세율은 40%
- 과세대상 소득이 R132,000인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R525,001인 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이 부과
- 다만, 65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54,200, 65세 이상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84,200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

5) 2007/08 과세기간 각 소득별 비중 : 개인소득세(29.5%), 법인세(24.5%), 부가세(26.3%), 관세(4.7%), 원료세(4.1%), 기타(11%) - 2008 TAX STATISTICS, SARS

○ 과세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소득 공제

- 의료비 지급액(단, 65세 이상인 경우 한도 없음)
- 퇴직연금기금(Current retirement annuity fund contributions) (R3,500와 비연금 소득의 15%까지 한도로 함)
- 종업원을 위한 접대비
- 사업과 관련 있는 출장비 및 교통 수당
-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과세대상소득의 10%까지 한도로 함)

○ 소득세 세율<sup>6)</sup>

(기간:2008.3.1~2009.2.28)

Taxable Income	Rates of Tax
0 ~ 132,000	18% of each R1
132,001 ~ 210,000	23,760 + 25% of the amount over 132,000
210,001 ~ 290,000	43,260 + 30% of the amount over 210,000
290,001 ~ 410,000	67,260 + 35% of the amount over 290,000
410,001 ~ 525,000	109,260 + 38% of the amount over 410,000
525,001 ~	152,960 + 40% of the amount over 525,000

○ 표준 근로소득세(SITE<sup>7)</sup>)

- 연간 순급여액이 R6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출장비(travelling allowance)를 받지 않는 개인 또는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 개인에게 완납적 원천징수 성격으로 납부

6) 2008/2009 회계연도 기준, SARS

7) Standard income tax on employees(SITE)

- 표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타 소득이 있거나 기타 공제 신청<sup>8)</sup>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 원천징수
  -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다음달 7일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임시 소득세 납부제도(provisional tax payments<sup>9)</sup>)
  - 근로소득세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임시 소득세 납부
  - 과세기간 중 6개월 간격으로 납부
- 신고기한
  - 신고기한은 매년 국세청이 지정하여 공포
  -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원천징수세액, 표준 근로소득세, 임시 소득세 납부액은 공제한 후 소득세 신고하며 세무당국은 과세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통지

### 3. 법인세

- 남아공의 법인세율은 28%이며, 과세 대상금액이 R54,201~R300,000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10%, 그리고 R54,200 이하는 법인세가 면제
- 남아공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33%의 법인세 부과

8) ①퇴직연금 공제에 대해 재계산 요청시 ②의료비 지출에 대해 재계산 요청시 ③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④이전 과세기간의 평가손실(assessed losses)

9) 우리나라 소득세 중간예납과 유사함

○ 사업연도

-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총수익 - 공제 가능 비용 - 비과세 + 자본이득 - 이월결손금

○ 감가상각비

-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첫 사업연도에 40%, 다음 3기 사업연도 간 20%씩 상각처리<sup>10)</sup>
- 농업 관련 기계류(바이오연료 관련 기계류 포함)은 첫 사업연도에 50%, 2기 사업연도 30%, 3기 사업연도 20% 상각처리
- 신축건물은 2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 종업원을 위한 기숙시설 건물은 첫 사업연도에 10%, 매 사업연도에 5%를 감가상각처리
- 계획 지역(designated area) 내 재건축 건물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 계획 도시개발지역(designated urban development zone) 내 상업용, 주거용 건물은 첫 사업연도에 20%, 나머지 16 사업연도 기간동안 매 5%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 연구개발비(R&D)

- 연구개발 관련 경비는 연구개발과 관련 직접 경비의 150%까지 인정
- 연구개발활동은 남아공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사용 등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됨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건물, 기계류, 장비 등은 50%, 30%, 20%로 가속

---

10) 단기 평가손실 적용가능

상각방법에 의해 감가상각처리

○ 결손금

- 결손금은 향후 발생할 수입금액에서 차감가능하며, 소급처리는 인정되지 않음

○ 원천징수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10%세율의 원천징수<sup>11)</sup>
- 비거주자가 남아공 국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를 통한 경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는 12%세율의 원천징수<sup>12)</sup>
-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원천징수<sup>13)</sup>

협약 국가	배당	이자	로열티
Korea	5/15	10	10

11) 2009년 이전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원천징수함

12)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경우 감액 또는 면제됨

13) 자료원 :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2009. Deloitte

○ 법인세 세율<sup>14)</sup>

(기간: 2008.4.1~2010.3.30)

유 형	세 율
Companies	28%
Small business corporations <sup>15)</sup>	
R 0 ~ 54,200	0%
R 54,201 ~ 300,000	10%
R 300,001 ~	R24,580 + 28% of the amount over 300,000
Employment companies	33%
Foreign resident companies which earn income in South Africa	33%

○ 배당세(STC)<sup>16)</sup>

- 법인이 지급하는 순배당금에 대해 배당세를 부과함
- 세율 10%<sup>17)</sup>
- 신고한 배당보다 초과하여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연도 지급될 배당금에서 차감하여 순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함

○ 임시 납부 세액(Provisional tax payment)<sup>18)</sup>

- 법인은 일반적으로 2회에 나뉘서 납부하며, 법인 선택에 의하여 3회 납부 가능함

14) 자료원 :SARS 2009.10.07

15) Small business corporations는 매출액이 R14백만인 법인임

16) A secondary tax on companies

17) 과거 12.5%이었으나 2007.1.1부터 10%로 인하함

18) 우리나라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함



- 2회 납부방식 :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월이 되는 날과 그 다음 사업연도 6월이 되는 날
- 3회 납부방식 :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월이 되는 날과 해당 년 말일, 그 다음 사업연도 6월이 되는 날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서 제출

#### 4.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 재화와 서비스 제공 및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세율

- 14% 및 영세율

○ 영세율 대상

- 승객과 재화의 국제이동의 경우
- 보험료와 보험료 관련 서비스
- 재화의 수출
- 등록된 사업자(vendor)에 대한 판매

○ 부가세 면세

- 금융거래, 대부
- 교육 서비스
- 거주시설 제공

- 도로 및 철도를 통한 국내 여객 서비스
- 퇴직금 지급
- 의료 서비스

○사업자등록

- 1년 동안의 매출(영세율 포함)이 R1,000,000<sup>19)</sup>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 5. 관세 및 특소세(Excise Duty)

- 관세는 수입 상품에 대하여, 특소세는 담배, 술, 화장품, TV, 오디오, 자동차 등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부과
- 특소세는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부과

---

19) 금액 2009년 기준,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2009. Deloitte.



## South Africa

### IV. 기타(중국, 일본과의 관계)

1. 중국
2. 일본



## IV. 기타(중국, 일본과의 관계)<sup>20)</sup>



### 1. 중국

#### (1)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

- 과거 사회주의 동맹차원의 정치적 협력관계 중심에서 안정적인 석유 등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전략 변화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지도급 인사초청, 차관제공 등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 2004년 2월 후진타오 주석의 가봉, 알제리 등 방문시 차관제공을 통한 원유 공급 계약 체결 및 유전 지분매입, 개발권 확보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불균형 시정 및 상품교역 확대를 위해 최빈 개도국들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 확대
- 아프리카 투자진출 기업들에 대해 저리의 특혜금융 지원 및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 체결 확대에 주력

#### (2)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창설

-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hina-Africa Cooperation Forum) 발족(2000.10월)
- 포럼은 3년마다 중국과 아프리카를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중국은 동 포럼을 아프리카 경제외교의 주된 채널로 활용
-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명분으로 부채를 탕감해주는

20) 자료원 :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

대신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 및 천연자원 확보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창설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채무 중 1억불 탕감

### (3) 중국-아프리카 개발협력기금(CADF)을 통한 아프리카 투자 전략

- CADF는 지난 2006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당시 후진타오 주석의 약속에 따라 2007년 6월 중국개발은행이 10억달러를 출자하여 설립
- 향후 50억달러로 증자 예정으로 광업에너지, 운송, 농업, 제조업, 인프라, 정보통신 부문이 우선 투자 대상 분야이며 중국개발은행이 독자 운영하며 투자 손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음
- 조직 운영
  - 아프리카를 5대 지역으로 나누어, 남부지역(9개국), 동부지역(10개국), 중부지역(9개국), 서부지역(14개국), 북부지역(6개국)의 지역담당부서를 설치
- 투자 대상
  - 농업, 제조업, 인프라(전력, 에너지시설, 교통, 통신, 용수개발, 하수처리 등), 에너지자원개발, 중국기업 전용 산업공단(industrial park) 조성
-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중국개발은행은 사무소 운영 및 협력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중국개발은행은 여타 주요 아프리카 국가에도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

## 2. 일본

### (1)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

- 일본 정부는 외교적 유대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

-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라는 협력 포럼 발족
-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남아공 광산기업 지분참여를 통해 광물 자원 수입
- 일본과는 외무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간 협의회(Partnership Forum) 매년 개최
  - ※ 일본은 다자차원에서 일본-아프리카국가 정상회의 매 5년마다 동경 개최
- 일본 Fukuda 총리는 TICAD-IV(08.5월)에서 2012년까지 대아프리카 지역 대외원조액 및 민간투자액을 각각 2배 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부아프리카 및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경제산업성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민.관 경제대표단(50명)이 보츠와나,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남아공을 방문
- 대규모 민관 경제대표단 파견을 통해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분야도 종전의 자원개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인프라 부문,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

**붙임. 한·남 조세협약**

[1996.01.07]

1995년 7월 7일 서명

1996년 1월 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관계의 촉진과 강화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996.01.07]**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996.01.07]**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농어촌개발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 (1) 보통세
- (2) 비거주자 주주세
- (3) 제2차기업세 (이하 "남아공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 제3조 【일반적 정의】 [1996.01.07]

####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남아공"이라 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남아공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공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남아공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남아공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회사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인정되는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회사 또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남아공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 제4조 【거주자】 {1996.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남아공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기타의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제5조 【고정사업장】 {1996.01.07}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 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기업 소유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제6조 【부동산소득】 [1996.01.07]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 【사업이윤】 [1996.01.07]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96.01.07]**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 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 나. 컨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사용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996.01.07]**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 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당해 조정을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 제10조 【배당】 [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제11조 【이자】 [1996.01.07]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 "가"호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나. 양 계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다. 자본 중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이 어느 계약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계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계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 지급인이 동 일방계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간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12조 【사용료】 [1996.01.07]

1. 일방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계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계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계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계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13조 【양도소득】 [1996.01.07]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없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996.01.07]**

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에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996.01.0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96.01.07]**

-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 교류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96.01.07]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완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19조 【정부용역】 [1996.01.07]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1) 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
  -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남아공중앙은행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함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20조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 {1996.01.07}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렇게 체재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1996.01.07}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한 또는 특정한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기타소득】 [1996.01.07]

1. 이 협약의 전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996.01.07]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남아공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남아공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

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남아공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남아공의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남아공의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납부할 총 남아공 조세에서 당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무차별】 {1996.01.07}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9조 제1항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한다.

####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996.01.07]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996.01.07]**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6.01.07]**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저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996.01.07]**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약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째 또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료】 [1996.01.07]**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 이후 5년째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 Rwanda

## I. 개황

1. 행정 및 정치
2. 경제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3. 생활과 문화





# I. 개황



## 1. 행정 및 정치

### 가. 행정구역

#### 1) 2006년 이전

2006년도 이전 12개의 1차 행정단위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2006년 1월 1일 이후 5개 행정단위로 개편

- 12개의 1차 행정단위

- 부타레(Butare)
- 비움바(Byumba)
- 키양구구(Cuangugu)
- 키콩고로(Gikongoro)
- 기센이(Gisenyi)
- 기타라마(Gitarama)
- 키붕고(Kibungo)
- 키부예(Kibuye)
- 카갈리 루랄(Kigali Rural)
- 키갈리 시(Kigali City)
- 루헨게리(Ruhengeri)
- 우무타라(Umutara)



## 2) 2006.01.01 이후

- 과거의 12개 1차 행정 단위를 5개 행정 단위로 개편

- 남부(Province du Sud)
- 서부(Province du l'ouest)
- 북부(Province du Nord)
- 동부(Province du l'Est)
- 키갈리 시(Ville de Kigali)



르완다의 수도. 인구 33만 명(1997년)

르완다의 거의 중앙이며,

1433m에서 1645 m의 고지에 위치

독일의 식민지 시대인 1907년에 세워져, 1962년 독립했을 때 수도가 되었고, 국제공항의 관문임

- 위 5개 행정단위는 2차적으로 30 개 지구(district), 3차적으로 416 구역(secteur)로 나뉨

## 나. 정치

### 1) 정치 일반

- 독립일 : 1962.07.01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국가 원수 : Paul Kagame 대통령
- 의회 : 단원제(80석)
- 주요정당 : 르완다 애국전선(RPF), 민주공화당(MDR) 등

## 2) 정치 정세

-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 당시 르완다 및 부룬디 양국에서 전통적인 지배 계급이었던 소수의 투치족이 축출되고 다수 후투족이 정권 장악
- 1994년 4월 하비아라마나 대통령(후투) 탑승 항공기가 피격·사망 후 3개월 간의 후투-투치족간 대규모 내전에서 르완다 애국전선(투치족, 우간다 지지) 승리
- 1995년 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탄자니아 Arusha에 르완다 국제형사 재판소(ICTR)설치
- 2000년 10월 Jean Kambanda 전 르완다 총리 항소심 기각, 원심 형량 (종신형) 확정
- 2003년 4월 6명이 복역 중
- 2003년 6월 25일 박선기 변호사, ICTR 비상임 재판관(임기4년)으로 당선
  - 2000년 4월 Kagame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
  - 2003년 9월 30일 여당 RPF 총선 압승(73%)
  - 2004년 4월 7일 르완다 대학살 10주년 추모행사
  - 2005년 르완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경제 재건 및 국민 통합에 주력 중
  - 2006년 11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가입

## 2. 경제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 관계

### 가. 경제

#### 1) 경제 정세 일반

- 르완다가 당면한 최대 문제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임(인구밀도가 아프리카에서 최고)
- 르완다의 주요 산품은 차와 커피로 EU 및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산품을 다양화시킬 계획
- 장기간의 내전으로 산업 전반이 파괴되었고, 상업 작물 또한 토지 황폐화로 수확이 급감. 1996년 이후 콩고 소재 르완다 난민이 귀환함에 따라 농업 생산이 증가

## 2) 부존자원 개발 현황

- 부존자원 : 주석, 텅스텐, 커피, 차
- 르완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음
- 농업 부문이 GDP의 60%를 차지하며 농업생산물의 95%는 르완다 내에서 소비됨
- 농지부족, 산림지역 감소, 농지의 산성화, 경작방법의 후진성, 불규칙한 강우량, 관개 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저조
- 농업 다음으로 주요한 산업은 연평균 2000톤 생산하는 주석광, 금광석, 텅스텐 등 광물 생산업이나 지하자원이 빈약한 편임
- 광업부문은 대체로 벨기에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EU와 미국에 수출

## 3) 시장상황, 개발정책 및 전략

### □ 주요 경제지표

- GDP : 27억 달러(2007년)
- 1인당 GDP : 273 달러(2007년)

- GDP구성 : 농업(39.4%), 제조업(23.3%), 서비스업(37.3%)
- 인플레이션 : 9%

□ 무역 규모

- 수출액(2005년) : 125백만 달러
  - 주요 수출 품목 : 커피, 차, 주식
  - 주요 수출국 : 독일, 파키스탄, 벨지움, 이태리, 케냐 등
  - 수입액(2005년) : 432백만 달러
- 주요 수입품목 : 중간재, 자본재, 식품, 기타 소비재
- 주요 수입국 : 케냐,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 투자여건

- 르완다는 잘 포장된 도로망을 갖는 등 개발 잠재력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지리적 위치가 유리
  - 콩고(DRC), 부룬디, 우간다 등 인접국까지 육로로 2시간 이내 거리
  - 르완다가 대량난민 발생지역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Kigali 시내는 안정되고 평온함

□ 외채

- 2001년 : 없음
  - IMF와 World Bank는 interim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따라 르완다의 외채를 탕감
- 2004년 : 17억달러
- 2005년 : 15억달러

## 74 ■ 남아공·르완다

- 2006년 : 4억달러
- 2007년 : 3억달러
- 2008년 : 3억달러

### □ 대외원조

- 부룬디와는 달리 국제연합개발계획(UNDP)를 통한 다자원조, 주요 서방국의 경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 경제개발 정책 및 전략

- IMF 및 World Bank는 르완다의 무역 및 외채상환 촉진을 위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자금 지원을 모색 중
- 르완다 정부는 발전을 위한 경제 자유화 및 민영화를 본격 추진 중

## 나.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수립일 : 1963.03.21

2) 교역 규모(2007)

- 수출 : 1,362천 달러
- 수입 : 97천 달러
- 주요 교역품
  - 수출품 : 자동차, 인조섬유
  - 수입품 : 농림수산물

### 3) KT 르완다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sup>21)</sup> 구축

- 2008년 10월 500억원 규모의 국가 통신 백본망 사업을 수주
- 2009년 11월까지 르완다에 전송망 및 인터넷망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백본망 구축의 기반인 광케이블과 네트워크운용센터 구축을 위한 보안 시스템과 관리시스템 등을 공급 계획

## 3. 생활과 문화

### 가. 문화

르완다인의 문화에는 옛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수단은 음악으로 탄생·결혼·죽음·추수·사냥과 관계되는 의식에 노래와 춤이 따르고 북과 ‘루룽가’라는 현악기를 연주한다. 또한 구전문학이 풍부하며, 이는 신화·민간설화·속담·시 등으로 되어 있다.

투치왕권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춤, 음악, 시가 많이 있고 1962년 독립 이후에는 후투족유산을 강조하는 문화 흐름을 강조했으며 종교적 춤이 각광받고 있다.

르완다의 옛 왕국에서는 전속 궁정시인을 두어 왕이나 추장의 행적을 찬미하고 예찬하는 시를 노래 부르도록 하였다. 예찬의 노래는 지나치게 아첨되는 경향도 있었고 강한 은유법이 사용되고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여 용기와 강인함을 예찬하기 위하여 코끼리나 사자에 비유시키기도 한다.

21) 연결되어 있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으로, 근거리 통신망에서 광역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회선 모음



▲ 사자머리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르완다 현지인들

아래의 전통춤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르완다 전통 춤은 손끝을 비트는 듯한 손 사위와 빠른 발놀림을 특징으로 한다. 손을 뒤로 돌리는 힘 있는 동작은 힘을 상징하는 소뿔의 형상이라고 한다. 여자들은 머리에 두 가닥의 흰 밴드를 두르고 발에는 요령을 달고 춤을 춘다.



▲ 전통춤 벽화



대표적인 전통예술로 옷감짜기와 바구니만들기가 있으며 바구니에 나타나는 표현력과 기술로 그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다. 부타레에 있는 르완다 국립박물관에서 전통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 전통바구니 '아가세체'

위의 사진은 '아가세체' 라고 불리는 르완다 전통 바구니의 일종이다. 제노사이드(인종대학살) 당시 엄청나게 불어난 과부들의 생계수단으로, 정부가 제공한 일거리 중 하나이다. 아가세체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팔거나 수출을 하기도 한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아가세체를 판매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만드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나. 지배체제

주민 대다수가 반투계 농경민인 후투족이 차지하고 있으나 일찍이 소수민족인 투치족 목축민이 지배계층을 구성하여 중앙집권적 왕국을 형성하였다. 약 40개의 지방조직으로 나뉘어 각각 농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관리하는 토지추장과 목축 생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관리하는 가축추장을 두었다. 이 추장의 대부분을

투치족이 차지하였으며, 또한 투치족은 전사단(戰士團)을 구성했다. 지방은 언덕을 단위로 하여 행정구역을 구분한다.



▲ 마을의 입구표시

각 구역 추장은 투치족이 많으나 후투족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토지추장과 가축추장은 봉사·공납매개(貢納媒介)를 한다. 투치족과 후투족의 계층관계는 신성한 존재이며 가치체계의 중심을 이룬 소를 둘러싼 봉건적 주종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소의 소유는 대부분 투치족이 독점해 왔으며, 후투족은 주인인 투치족에 대해 농작물의 공급과 노역 등의 의무적 봉사를 통해 소를 가지거나 사육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다. 종교관념

르완다 사람들의 <생명력>을 둘러싼 복잡한 종교 관념은 르완다 출신 A. 카가메의 《반투르완다인의 대지철학(大地哲學)》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전통종교 연구가 활발해졌다. 주민의 약 65%가 가톨릭을 믿고 있고 추기경도 선임되었다. 이슬람교도도 일부 있다.

## 라. 관습

‘수천개 야산의 땅’(land of a thousand hills)으로 알려진 르완다는 한 야산에서 모든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친척들도 같은 야산이나 혹은 근처의 야산에 모여 살고 있어서 가족간의 유대가 강한 편이다.

또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르완다 인들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한다. 게다가 손님이 찾아 오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며 만약 이를 거절하면 상당한 모욕으로 생각한다. 이곳은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물대신 값싼 탄산음료를 즐겨 마신다.



전통적인 위계사회의 역사 때문에 르완다 인들은 존경의 표시로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정 내에서는 남자들이 의자에 앉고 여자들이 바닥에 앉는다. 물론 손님이 올 경우에는 가장 좋은

의자를 제공한다. 음식도 역시 남자들이 먼저 먹고 다음에 여자, 아이 순서로 먹는다. 일반적으로 르완다 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악수를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경우 경외의 표시로 오른손을 먼저 내밀고 왼손은 오른팔 위에 놓는다.

## 마. 특이문화

길에서 음식을 먹는 행동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길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포장마차와 같은 노점 음식점이 없다.

미인대회 심사기준에서 코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이유는 1994년 인종 학살 당시 코가 르완다의 부족 후투족과 투치족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르완다를 식민 지배했던 벨기에는 소수족인 투치족을 우대해 후투족을 지배하게 하는 정책을 썼다. 벨기에 인들은 투치족이 “넓은 이마, 작은 코, 그리고 작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으며, 그들을 “까만 피부의 유럽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유럽인과 비슷한 외모의 투치족이 우대되면서 그렇지 않은 후투족은 열등한 종족으로 취급되었다. 두 종족은 결국 갈등을 일으켜 1994년에 세달 동안 80만 명의 투치족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반면 미인 대회가 르완다인 사이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인대회 입상자들은 키가 큰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투치족이 키가 크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드물게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허용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농경 사회를 중시하는 부족들은 대부분 결혼으로 부족 공동체의 결속력이 다져지고 노동력을 얻어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금기시 하는 경향이 강하나 르완다는 그렇지 않다.



▲ 창살이 설치된 주택

위의 사진과 같이 르완다의 집은 창문에 굵은 쇠로 된 창살들이 거의 빠짐없이 보인다. 이는 인종 학살과 오랜 내전의 영향이다.

또한 전통적인 사법제도인 ‘가카카’ 제도가 있다. 이는 가카카는 자치지역에 기반을 둔 제도로, 10명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과거 내전과 인종 학살에 대한 과거 청산을 위해 폴 카가메 대통령에 의해 부활된 이 제도는 범인이 주민들 앞에서 죄를 실토할 경우 용서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 후 한 마을에 섞여 사는 르완다만의 독특한 상황을 만들었다.



▲ 오토바이 택시

르완다 전역에서 오토바이 택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상의 색깔이 운행구간을 표시한다. 초록색은 시내를 들어 갈 수 있고, 청색은 운행 구역에 제한이 있고 다소 짧은 거리를 운행하며 시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오토바이 크기도 청색이 조금 작은 경우가 많다. 헬멧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요금은 기본 200프랑(약400원)이다. 교통 사정이 여의치 않은 수도 외의 작은 도시에서는 이 교통수단이 아주 절대적이다.



## Rwanda

### Ⅱ. 주요 세법

1. 법인세
2. 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지방세
5. 소비세
6. 원천세
7. 기타 지급에 대한 원천세
8. 투자혜택
9. 투자법인설립
10. 국세청 조직





## II. 주요 세법



### 1. 법인세

#### 가. 과세소득

- 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따른 소득, 및 자산의 임대료 소득을 포함

#### 나. 납세의무자

- 국내외 설립된 등록법인
- 조합과 지점들
- 공공영리기업
- 파트너쉽(공동기업)
- 주정부, 시, 지자체, 키갈리시에서 설립된 사업영역을 가진 사업자
- 이익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업성을 가진 기타 조합, 회사 등

#### 다. 적용세율 : 30%

#### 라. 신고 및 납부기간

- 사업연도 시작부터 6개월 이내로, 1월 1일 사업연도 시작시 6월 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임
- 분기별 납부
  - 세금 납부시 법인세 51조, 52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원천 징수된 세금은 공제됨

- 사업연도 이전 사업 시, 분납금액은 개시전 사업월을 12월로 환산 후 분납
- 51조
  -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얄티, 경영자분류, 예술·음악·운동선수의 인적용역 소득 등에 15% 원천징수된 세금, 복권 및 도박수익
- 52조
  - 관세(상업용 수입재화가격의 5% 원천징수 세액)
  - 공공 입찰료(공공시설 입찰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송장가격의 3%를 원천징수)

## 마. 세금혜택

### 가) 투자공제

- 등록된 사업자의 최초 사업연도에 투입된 투자액의 40%까지 공제가능 (단, 8인 이하의 사적목적 관광용 차량을 제외)
- 사업자산이 3천만 RWF 이상
- 투자허가 후 최소 3과세기간에 설립된 자산
- 키갈리외 지역 및 투자법상 투자우선지역내 등록된 경우 50%

### 나) 훈련 및 연구비용

- 과세기간동안 사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교육훈련비용은 그 비용이 신고 및 인정되었을 시, 법21조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 공제되는 교육훈련비
  - 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

다) 결손이월과세

- 결손은 다음 5개연도 까지 이월공제 가능하고, 공제는 발생순서대로 공제됨
- 해외손실은 국내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손실은 주식의 25%이상 변동이 일어난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손실은 공제되지 않음

라) 할인 및 면제

- 과세소득할인

〈등록된 투자자의 르완다인 고용대비 할인율〉

고용된 르완다인(명)	할인율
100-200	2%
201-400	5%
401-900	6%
901이상	7%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 단, 최소 6개월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하고, 원천세 면제되는 사업자(당국에 허가받은 소금융 활동사업자)는 제외

〈수출하는 금액대비 할인율(수출대금 국내송금시)〉

수출금액(US\$)	할인률
3,000,000~5,000,000	3%
5,000,000 초과	5%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 바. 벌금 및 이자

### - 벌금

- 조세범칙자의 경우 탈세액의 200%를 행정벌금으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 고의로 장부를 위조하는 등의 탈세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시 6월에서 2년의 징역형 가능

### - 벌금부과 대상 준수사항

- 신고기간내 신고, 신고기간내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국세청요구자료 제출, 세무조사협조, 불복절차에 대한 적정이행, 적법등록, 선납세금의 납부

### - 벌금양형

- 연매출 2천만 RWF까지 10만 RWF
- 연매출 2천만 RWF초과시, 30만 RWF
- 세무당국에 대납세자로 분류 통보된 납세자는 50만 RWF로 5년내 동일한 2회 위반시, 원래의 2배

## 2. 소득세

### 가.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6.30일까지 국세청(주별 대 중소 납세자별 세무기관)에 신고

### 나. 납세의무자

-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르완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

### 다. 과세 대상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예)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 고용소득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현금 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모든 지분을 포함한

- 임금, 급여, 휴가비, 의료비와 의료수당, 휴가보상금, 사례금, 수수료, 축의금과 장려금을 포함한 보너스 등
- 수당, 생계비, 생활비, 주거비 및 여가 수당 또는 출장비 기타
- 기타 현물보상(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 현물급부, 시장가치로 평가)

※ 현물보상 : 현물급부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중 종업원의 자가용 이용과 그 이용가치를 고용소득의 10%로 평가하여 과세대상소득에 합산함

- 종업원에게 3개월치 연봉을 초과하는 선지급된 급여를 포함하는 대부소득은 차등을 두어 평가(대부 받았던 기간 동안 종업원에 의해 지급되었고 르완다 국립은행이 상업은행에 제안한 이자율에 의하여 평가된 대부이자와, 그 기간 동안 종업원에 의해 지급된 실제이자)

## 라. 세율

### ○ 누진세율 적용

연간소득금액(RWF)	세율
360,000 이하	0%
360,001~1,200,000 이하	20%
1,200,001 이상	30%
20,000,000 이하(도매업자)	4%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 마. 벌금과 이자

- 벌금부과 대상 준수사항
  - 기간내 신고
  - 기간내 원천세신고
  - 원천징수
  - 세무당국 요구자료 제출
  - 세무조사협조
  - 7조에 의한 불복절차의 규정준수
  - 동법에 의한 적법등록
  - 소득세법 12조 「세금신고」, 13조 「근로소득」, 15조 「현물급부등 소득」 준수
  - 예납 납기준수
- 벌금
  - 납세자의 연매출 20,000,000RWF 이하시, 100,000RWF

- 납세자의 연매출 20,000,000RWF 초과시, 200,000RWF
- 국세청에서 통지된 고액납세자 해당시 500,000RWF

### 3. 부가가치세

#### 가.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 매출이 연 20,000,000RWF 또는 마지막 분기매출이 5,000,000RWF이상인 회사
- 납세부담자
  - 최종소비자

#### 나. 부가세 납부관련 등록된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등록증 게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세계산서 발행, 매월 환급신고, 장부작성

#### 다. 면세품목

- 농업생산물 : 가축, 미가공 동물제품, 어류, 채소
- 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 의료서비스제품, 맹인을 위한 약 및 의료재료
- 교육서비스, 교육기관, 책, 잡지, 카세트, 디스크를 위한 교육자재 공급
- 버스, coaches 등 교통서비스
- 농업지역에 물 공급, 장례서비스, 보석류, 재산 및 생명보험 서비스, 투자등록 허가에 의한 수입품

## 라. 부가가치세율

- 재화 및 용역에 기본세율 18%
- 기술원조, 프로젝트, 외교서적구입, 협정된 기부금 0%.

## 마. 신고 및 납부

- 월 단위 세계산 및 납부
- 다음달 15일까지 환급 신고

## 바. 환급(모든 환급은 국고 잔고 유지시 환급됨)

- 환급세액이 200,000RWF-2,000,000RWF, 국세청에 의해 환급
- 환급세액이 2,000,000RWF 초과시 또는 2,000,000RWF 이하가 연속 3회 기간 이상시 국세청조사
  - 동조사는 사업장조사전에 먼저 서류조사 선행
- 중간 규모납세자  
200,000-100,000RWF미만, 다음신고기간 신고에서 공제 및 환급
- 소규모납세자
  - 50,000RWF 미만시, 다음 신고기간에 공제
  - 50,000RWF 이상-500,000RWF 미만시, 즉시환급
  - 500,000RWF 이상시 또는 3회 연속 환급시 국세청은 환급조사,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 사. 벌금

- 부가세 등록대상 사업자가 미등록시 납부 부가세액의 50%



- 부가세액의 100% : 잘못된 계산에 의한 납부세액과소, 매입의 증가시
- 부가세액의 150% : 무등록사업자가 위의 위반시

#### 아.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탈세시, 납부세액의 200% 또한, 고의적 탈세시, 고발되고 유죄확정시 6월에서 2년 까지 징역형가능
- 탈세고발제도 운영

### 4. 지방세

- 등기된 주택, 토지는 재산세납부(기 폐지된 인두세 성인 1명당 400RWF이 대체된 것)
  - 세율은 각 지역, 시 또는 시의회에서 정함

〈임대소득세율(다음해 3.31까지 신고)〉

소득금액(RWF)	세율
0-60,000	0%
60,001-180,000	10%
180,001-300,000	15%
300,001-600,000	20%
600,001-1,000,000	25%
1,000,000초과	30%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 〈사업면허세(사업자인 개인,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 등)〉

Type of activity	Base P	Rural Area	Town	City of Kigali
A) Vendors without shops, small scale technicians who do not use machines, transporters of people and property on motorcycle  노점상,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기술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과 자산을 운송하는 업자	PA	1PA	2PA	2PA
B) Traders and technicians who use machines  기계사용 무역업자 또는 기술자	PB	5PB	10PB	20PB
C) Any transporter not mentioned under A  A에 언급되지 않은 운송업자	PC	10PC on each car	10PC on each car	10PC on each car
D) Hotel business self employed  호텔사업 자영업자	PD	5PD	30PD	100PD
E) Professional taxpayer services rendered to others and the like  전문 인적용역	PE	10PE	20PE	20PE
F) Industries, imports and export business  수출입산업	PF	120PF	120PF	120PF
G) Insurance, banking and the like  보험, 은행 등	PG	30PG	100PG	100PG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 재산세

〈주택 등 (Occupied houses)〉

소재지	제곱미터당 세율
Kigali	50 RWF < 210 RWF
other urban areas	50 RWF < 130 RWF
Trading centers	25 RWF < 96 RWF
other places	5 RWF < 55 RWF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등록된 대지〉

소재지	제곱미터당 세율
Kigali City	20 RWF < 50 RWF
other urban areas	10 RWF < 20 RWF
Trading centers	1 RWF < 10 RWF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5. 소비세**

가. 소비세 대상

- 맥주, 레모네이드, 담배, 와인, 르완다에서 만들어진 광천수 그리고 르완다에서 운영되어 제공되는 전화통신(telephone communication) 용역은 소비세 부과
- 소비세는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 소비자를 위해서 공장에서 반출될 때, 그리고 통신 용역이 제공될 때 부과됨

## 나. 소비세율

- 주스와 과일(5%), 소다와 레몬레이드(39%), 광천수(10%),
- 맥주(60%), 와인(70%), 브랜드·liquors·위스키(70%)
- 담배(150%), Telephone Communication(3%)
- Fuel(excluding benzene), 연료(벤젠은 제외)가스, 연료, 윤활유(76%)
- 분유(10%), 2500cc이상의 자동차(15%), 1500cc에서 2500cc 사이의 자동차 (10%), 1500cc 미만의 자동차 (5%)

## 다. 신고 및 납부

- 공장반출 소비세는 아래와 같이 매월 10일 단위로 3개 과세기간으로 구분되며, 매 과세기간 종료후 5일 이내에 신고 납부
  - 1일에서 10일까지
  - 11일에서 20일까지
  - 21일 이후에서 말일까지

## 6. 원천세

### 가. 신고 및 납부

- 사업주는 유효한 고용소득을 발생시, 다음달의 15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 30일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근로 소득의 15%(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의 계약시 원천세율은 15%)

〈과세구간별 원천징수 세율〉

월별 과세구간(RWF)	세율
0 ~ 360,000	0%
360,001 ~ 1,200,000	20%
1,200,001 이상	30%

※ 출처 : 르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rra.gov.rw)

- 도매업자 연매출의 4%를 일시불 납입
- 사용자는 관련 장부보관 책임. 사업주가 원천징수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 등록·신고·장부 작성·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의무
- 근로자의 첫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입 30%까지 원천징수
- 두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거나 연말 보너스와 같은 비정기적 근로 소득을 받는 개인은 연말정산시 환급신고 가능하며, 이때 환급은 5,000RWF를 초과할 경우에만 환급됨
- 2인 이상의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가 첫 고용주인지를 지정하여 고용주들에 관한 사항을 신고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본인이 근로자의 첫 번째 고용주임을 명확히 해야함

**나. 벌금과 이자**

- 납세자는 납기내 미납시, 세금총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
-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르완다국립은행의 월별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부과됨  
 예) 은행간 이자율이 9%시, 가산세 11%
- 벌금대상 준수사항

- 신고기간내 신고, 신고기간내 원천세신고, 원천징수, 국세청에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 세무조사협조, 세무절차법 7조의 불복절차시 규정준수, 법에 규정된 적법등록절차 준수, 과소신고분에 대한 국세청 고지전 수정신고, 세무절차법의 12조(탈세)·13조(원천세 미납) 준수

12조 : 탈세에 대해 탈세액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됨. 고의적 탈세의 경우(회계장부조작, 증빙조작 기타 위법 사항 등) 고발 조치하고, 유죄 판결시 6월에서 2년 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13조 : 의도적으로 징수된 원천세를 세무당국에 미납부시에는 납부세액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 유죄확정시 3개월에서 2년 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7. 기타 지급에 대한 원천세

### 가. 과세대상소득

- 거주자, entity(면세 entity포함)의 배당, 이자, 로얄티, 경영 자문료, 예술·뮤지션·운동선수의 인적용역(entity의 국내외·직·간접과 관계없이), 복권·도박수익 소득에 부과

### 나. 세율

- 15%

### 다. 신고 및 납부

- 원천 징수된 세금은 징수일로부터 15일(휴일제외)내 국세청에 납부
- 위 사항은 비거주자(개인, entity)포함됨
- 신고서류 원천징수 후 10년 보관의무

**라. 기타**

- 상업재화의 수입시 5% 관세가 원천징수 됨
- 공공기관입찰에 의한 재화 및 용역 공급시 3%

**마. 면세**

- 면세사업자, 청장발행 납세면제허가증 소유사업자(성실 납세자에게 국세청장이 발급, 발급한 당해 연도에 유효함)

**바. 배당금**

- 고정세율 15%(배당소득에 대해)
- 배당세 원천 징수시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 주식배당, entity 및 기업에서 분배되는 유사소득포함

**8. 투자혜택**

**가. 투자청에 등록된 투자자에 의해 수입된 재화의 관세감면**

- 산업재 또는 원자재
- 개인적용도의 1개의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 소지품. 해외파견직원도 적용
- 사적교육수강을 위한 투자자를 위한 사무장비 등
- 등록차량으로 호텔셔틀, 여행객의 수단인, 앰블런스, 병원과 건강 센터에서 승인된 장례차량, 소방차
- 여행객운송위한 개인비행기
- 자본재, 장비, 원자재, 자유지역에 투자자에 의해 수입된 재화

- 수의장비, 약, 농업 산업재, 농업분야 투자자를 위한 어업권
- 호텔, 여행 산업, 유원지 장비(건설마감재 투자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의해 수입된 건설재 및 마감재는 CIF가격의 고정 5%가 면제됨)

#### 나. 요건충족 투자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혜택

##### (INCENTIVES OFFERED FOR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 기계, 원자재
  - 기계, 원자재를 수입하는 투자자
- 소지한 물품에 대한 우대
  - 등록된 투자기업을 위해 일하는 해외체류 외국투자자의 개인 자동차, 관세법에 부합하는 가사 소유물, 개인소유물
- 교육분야 장비
  - 개인적 교육시설로 등록된 투자자는 일반적 물품, 수입장비
- 특별한 운송장비
  - 호텔셔틀, 냉동차, 관광차량, 앰블런스, 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수입하는 등록된 투자자
- 등록된 관광 항공기
  - 관광운송을 위한 항공기를 수입한 투자자
- 자유경제지역
  - 자유경제지역에서 운영하는 투자자는 수입하는 기계, 장비, 산업원자재, 기타 다른 재화
- 건설 및 마감재화
  - US \$1,800,000이상의 건설프로젝트를 위해 건설자재 수입하는 등록된



투자자는 송장가격(CIF)의 5%관세 면제

- 의료장비, 의약품, 농업장비, 주식, 수산분야투입재화
- 호텔, 관광장비 등 면세
  - 관광 및 호텔 산업투자자가 수입하는 기타 장비

#### 다. 직접소득세에 대한 혜택

(INCENTIVES OFFERED IN THE LAW ON DIRECT TAXES ON INCOME)

##### 1) 투자수당 (INVESTMENT ALLOWANCE)

- 40% 수당혜택이 있으며, 아래자산에 대해 그 구입한 최초 사업 연도에 등록된 투자자로부터 감가상각
- 사업자산이 3천만 RWF초과
- 사업자산을 3년 동안 보유
- 키갈리 외부 농업지역(지방), 르완다투자촉진지역에 설립된 지역에 돈을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투자자인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 2) 교육훈련비(TRAINING AND RESEARCH EXPENSES)

- 미리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발생된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는 직접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으로 부터 공제 가능

##### 3) 르완다인의 고용 및 이익과 관련된 세율

- 과세사업소득에 천이하 단위 절사 후 30% 세율까지 부과됨
- 르완다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면세대상 경제활동체
- 투자촉진법 해당투자자는 아래 혜택

- 0% 법인세
- 직접소득세법 51조에 규정된 이자소득세 면세
- 해외로 면세송금

#### 4) 등록된 투자자는 소득세 할인혜택

- 동 할인은 대상 고용인을 과세기간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시 적용되며, 면제대상소득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할인에서 제외됨
  - 2% 할인, 100-200명 르완다인 고용시
  - 5% 할인, 201-400명 르완다인 고용시
  - 6% 할인, 401-900명 르완다인 고용시
  - 7% 할인, 900명 초과 르완다인 고용시

#### 5) 수출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율에 있어 혜택

- 3%할인, 미국달러 3백-5백만 달러 수출대가 국내 송금시
- 5%할인, 미국달러 5백만 초과 수출 및 국내송금

## 9. 투자법인설립

### 가. 르완다 투자등록획득 기본사항

- 회사설립절차는 쉽고, 합리적이며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 적정한 서류 제출시 48시간이내에 등록허가서 발급

### 나. 회사등록을 위한 기본서류

- 신청서

- 승인계획서
- 동의서 및 납부
- 투자등록허가서
- 법적 서류
  - 정관 및 규약의 공증 사본
  - 법인설립인가증의 공증된 사본

#### 다. 투자신청서에 포함될 사항

- 제안된 영리법인의 이름, 주소, 법적형태
- 제안된 사업 활동의 기본성격 및 투자규모
- 예상 고용인 수 및 창출된 일자리의 범주
- 기업의 운영에 의해 자연의 소포규모, 그리고 그것의 관리를 위해 제안된 방법
- 투자자는 르완다 자연을 보호·촉진하는 것을 추구해야 됨
- 투자 사업계획 또는 타당성조사는 다음 사항 포함
  - 임원 및 프로모터의 프로필
  - 프로젝트 배경
  - 시장조사
  - 5년 이상의 투자계획
  - 부채와 자본규모
  - 5년간의 소득 및 비용에 대한 프로젝트 계산서
  - 5년간 프로젝트 대차대조표

- 현금흐름표, 원금회수기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 은행채무 존재시 채무 할부상환계획
- 프로젝트 이행계획
- 사업계획을 위해 만들어진 보증서

#### 라. 법적서류

- 정관 및 규약의 공증된 사본
- 법인 설립 인가증의 공증된 사본

#### 마. 거절 및 허가의 통지

- 문서로 통지하며 허가시 르완다 투자청 또는 BNR에 US\$500 수수료 청구서
- 거절시 문서통지하며 필요시 미비내용 설명

#### 바. 투자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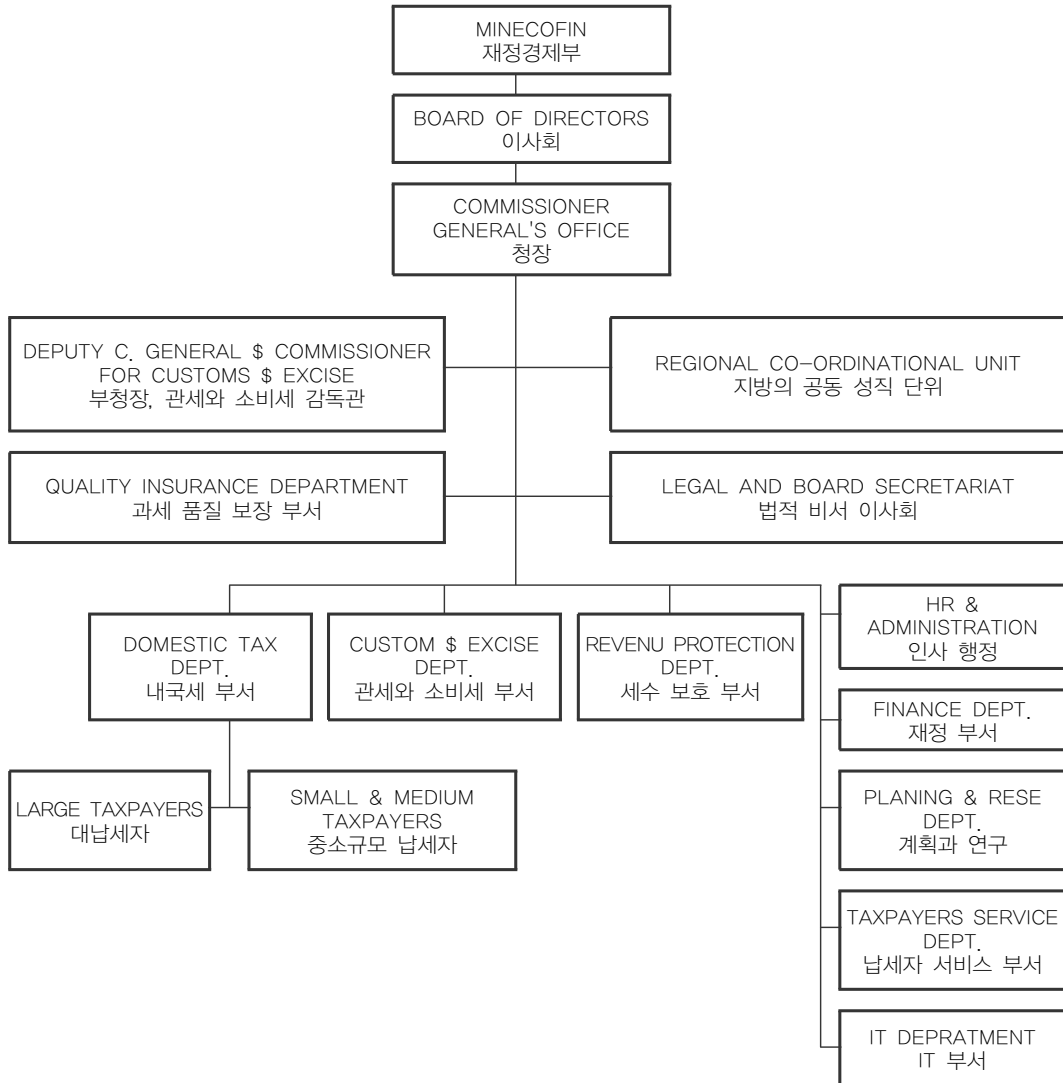
- 투자규모 및 질적 일자리 창출 규모
- 기술이전
- 지역 원자재사용
- 수출을 위한 잠재적 재화
- 후방전방효과 큰 잠재성
- 혁신 및 창조
- 수출다변화를 위한 투자

〈세 율 표〉

구 분	세 율	관련법령	제출
법인세	- 30%	Art.12 law no.16/2005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	- 최대 30%의 누진세 - 과세표준 구간, 1년 소득 기준 (단위: 1,000천RWF) 0~360,000 : 0% 360,001~1,200,000 : 20% 1,200,001~ : 30%	Art.11 law no.16/2005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원천세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 (단위: 월별, 천RWF) - 0~30,000 : 0% - 30,001~100,000 : 20% - 100,001~ : 30% - 임시직 : 15% - second employer : 30%	Art. 48,49,50 law no.16/2005  Art.48 par.5 law no.16/2005	- 다음달의 15일 이내
	배당금, 이자 등 - 거주자, 비거주자 : 15% (고정세율)	Art.12,32-35 and 51 law no.6/2005	- 지급 이후 15일 내
	수입 - 상업적 용도로 수입된 상품 CIF금액의 5%	Art.52 law no.6/2005	- 세관에 의해 통관되기 전
	분기예납 - 이전 소득세의 25%	Art.31 law no.6/2005	- 9/30, 12/31, 3/31까지
부가세	- 18% - 수출품, 서비스 : 0%	Art.29 law no.06/2001 Art.29 ministerial decree	- 공급품 : 다음달 15일 이내 상품이 공급될 때 , 송장이 발행될 때, 지급할 때 부가세가 부과 - 수입품 : 관세를 납부할 때 - 부가세 환급 : 반품 후 30일 이내
소비세	- 쥬스(39%), 레몬에이드(39%), 물(10%), 맥주(60%), 와인(70%), 담배(120%), 전화세(3%)	Art.1 law 56/2006 law 26/2006	-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 공장에서 반출되는 때 - 세금 환급은 15일, 25일, 5일에 이루어짐

## 10. 국세청 조직

〈국세청(The Rwanda Revenue Authority: RRA) 조직도〉



### 가.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RRA는 내각의 추천으로 수상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회 의장 아래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사회는 RRA의 공식화와 실행을 책임

### 나. 청장(The Commissioner General)

- 청장은 RRA의 수장이다. 청장은 조직의 최고경영자이고 RRA의 매일의 운영을 책임
- 청장은 5년 임기이고 한번 연장가능하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
- 청장은 5년 임기이고 한번 연장가능하며, 수상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된 부청장의 의해서 보좌
- 청장은 재정경제부 장관 계획의 추천으로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회계연도 정책을 수행

### 다. 부청장(The Deputy Commissioner General)

- 부청장은 5년 임기이고 한번 연장가능하며, 수상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
- 부청장은 또한 관세와 소비세 부서의장이 됨
- 관세와 소비세 부서의 역할Customs and Excise Department's Mission
- 최소의 비용으로 수입에 기인한 모든 수익이 모집을 최대화하고 함으로서 RRA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반응과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용이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역할
- 관세 부서의 전략적 목적은 모든 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수입들이 적절한 법의 효율적인 행정를 통해서 지불되는 것은 확보
- 국가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적 그리고 외국의 투자를 극대화 하는 것이고, 반면에 위협한 물자의 수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

### 라. 인사 행정(Human Resources & Administration)

- 인사 부서는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람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인재 모집과 유지 그리고 유능한 인간 자본의 개발에 의해서 고객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수입 극대화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
  - 인재모집(Recruiting)
  - 훈련(Training)
  - 유지(Retaining)
  - 우수한 능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보상
  - 수행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 마. 법 이사회 사무국(Legal and Board Secretariat)

- 법 이사회 사무국은 RRA의 세무행정 에 대한 법률적 지원서비스를 제공
-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 제정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써, 법원의 세금 판례와 그들의 조기 결정의 견해에 대한 잠재적이고 관련된 판례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
- 최소의 비용으로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법적인 조언과 안내를 제공하며, 효과적으로 이사회를 돕고 소송을 관리하고 조정
-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효과적인 입법을 확실히 하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수행
- 모든 소송에 있어서 당국의 입장을 대표

#### 바. 내국세 부서(Domestic Taxes Department)

- 내국세 부서는 one-stop, 효율성과 고객지향 세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4월에 설립



- 기본적인 목적은 대 납세자에 대한 증가와 동등한 조정과 대 납세자의 승낙과 정부에 대한 수입 양도를 향상하는 것이고, RRA 전체 수입의 50%이상을 차지
- 내국세 부서는 i.e Large Taxpayers' office(LTO)와 Small and Medium Taxpayers office(SMTO)로 구성된다.
- 납세자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정중하고도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RRA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목적에 기여 하고 세금 정책 부서의 양질의 정책을 제공
- 대 납세자 및 중간규모 납세자의 승낙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수입을 극대화하고, 좀더 좋은 서비스 제공과 수입 극대화의 목적을 가지고 중간규모 납세자를 소규모 납세자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함
- 또한, 세금 납부 범위로 비공식적인 부분으로부터 소규모 납세자들을 포함 시킴으로서 과세기반 확대
- 내부적 조정을 향상시키므로써 수입 손실을 최소화
-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 구성원들의 능력 향상

#### 사. 관세와 소비세 부서(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관세부서의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수입에 부과된 모든 수입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반응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RRA의 목표 달성에 기여
- 관세 부서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수입들이 적절한 법의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불되는 것을 확보

-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적 그리고 외국의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에 위험한 물자의 수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
- 재정적인 책임을 별도로 하고, 관세부서는 다음의 임무 수행
  - 관세 입법과 다른 관련 법률에 대한 강화
  - 적법한 무역의 용이
  - 금지된 물품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의 사회적인 방어
  - 경제 계획을 위한 무역 통계의 편찬
  - 의무를 회피하고 부정한 형식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 아. 세수 손실방지 부서(Revenue Protection Department)

- RPD 임무는 밀수입, 세금 탈세, 세입 법률의 위반뿐만 아니라 회피 방지, 발견 그리고 예방하므로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
- 세금회피와 밀수에 대한 전쟁
- 세금납부 의무의 회피에 속하는 정보의 수집과 보급
- 세금 법률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제지 수단의 제공
- 세금 회피와 세금 부정 그리고 밀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조사
- 재정 범죄 기소를 위한 보고서와 추천서의 편찬
- 직원의 성실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제어 시스템 작동의 효율성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만족 제공

### 자. 재정부서(Finance Department)

- RRA의 임무와 일치하게, 재정부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회계시스템과 진행의 수립과 유지
- 정부수입과 사회적 안전 기금 기부의 징수, 보호, 회계,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진행과정을 보증하므로써 정부 수입 흐름의 극대화 과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든 징수 비용의 최소화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 비용 유지와 조정의 시스템 설립과 유지
- 국가적 계획과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르완다 정부를 아울르는 RRA의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만한 재정 관리 정보 제공 수단의 개발과 유지

### 차. 납세자 서비스(Taxpayer Services)

- 납세자 서비스를 위한 관리자, 납세자 서비스 부서의 주요 책임은 고객 교육과 대중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납세자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 투자자와의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 형성
- 부서는 자발적인 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적 그리고 기술적 세금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화된 방법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 중의 일부는 매년 납세자의 날과 같은 대중 이벤트에 고객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맞춤형 세무서비스 (tax clinics tailored)를 제공
- 전략적 대중 관계 활동과 고객 보호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금 인센티브에 대해 납세자를 교육하고, 고객서비스의 일반적 표준의 수행
- 나라에서 세금의 중요성, 순응하는 납세자의 역할, 세금 인센티브와 납세자 등록에 대한 설득력있는 납세자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남아공 및 르완다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남아공 및 르완다 세법 등을 2009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남아공 및 르완다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 1424

팩스번호 : 02-723-9976

###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행정사무관 장일현

세무조사관 고당훈

서울청 금천세무서 : 세무조사관 박지상(남아공) (02-850-4286)

서울청 용산세무서 : 세무조사관 정봉균(르완다) (02-748-8525)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2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